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폐지 등〉
■ 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202291호

2024.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폐지 등	2

I. 제안경위

2024년 7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폐지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40조 삭제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상업용 목적	<삭 제>

의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심층수개발업자를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로 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을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업무에 사용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 대하여는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7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양심층수 평균 공급가격의 1천분의 1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분할

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⑥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1. 해양심층수 등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2. 해양심층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

3.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4. 취수해역에 대한 수질검사 등 해양생태계 훼손방지를 위한 사업

5. 해양심층수 취수로 인하여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4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

<u>우에는 징수된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u> <u>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방법과 관련한 평균 판매가격 및 평균 공급가격의 산정방법,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징수된 부담금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되고 있음.

같은 법 제40조제6항에 따르면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은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해양심층수 등의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을 사용 용도로 규정하고 있음.

[표] 부담금 부과대상 및 요율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부과요율
① 제조하거나 수입하며 먹는 해양심층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수입업자, 해양심층수 처리수제조업자·수입업자	0.5 %
② 상업용 제품(먹는해양심층수 제외)의 원료로 구입한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	5.3 %

□ 개정안은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최근 정부가 마련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임.

-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관의 폐지대상 부담금은 수산자원조성금,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의 총 3가지인데,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경우 부과 실효성 및 실적 미흡 등으로 부과 타당성이 낮아 폐지대상이 되었음.

[표] 해양수산부 소관 폐지대상 부담금

부담금	폐지 사유
수산자원조성금	국민들이 그간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 폐지·감면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요금·가격 등을 통해 국민에 부담이 전가되는 부담금 폐지·감면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인한 정책목적 달성, 부과 실효성·실적 미흡 등으로 부과 타당성이 낮은 부담금은 과감히 폐지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은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여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의 수질관리 및 산업육성 등의 재원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려는 취지이나,

현재 해양심층수 업계의 경영난¹⁾ 및 코로나19²⁾ 등을 이유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 규정³⁾을 마련하여 2016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되어 있는 상황이며, 종전의 실적을 보았을 때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수납금액은 최소 6,600만원에서 최대 1억 2,300만원 정도로 부담금 수납금액이 크지 않았음.

또한, 2025년부터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 다시 부과된다고 하면 대상 업체는 6개사 정도로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첨부1) 부담금 존치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여짐.

[표]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건수 및 수납현황('08~'16)

연도	건수	수납금액(만원)
2008	8	6,661
2009	23	6,196
2010	20	7,033
2011	24	10,097
2012	27	8,228
2013	29	7,718
2014	22	12,353
2015	19	6,743
2016	13	6,616

1) 2016년 7월 1일~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

2)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면제 기간 연장

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문 의 처
02)6788-5418

첨부 1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부과 시 대상 업체 수(예상)

먹는해양심층수 및 처리수 제조업체 현황(6개사)

제조업체명	허가일자	허가기관	생산 제품명
(주)워터비스	'08.4.	강원도	몸앳좋은물, 농협하나로해양심층수(OEM) 등
(주)강원심층수	'09.4.	강원도	천년동안, 베이비워터, 키즈워터, 605M 심층수(OEM) 등
(주)울릉심층수	'09.5.	경상북도	청아라
(주)파나블루	'09.6.	경상북도	미생산
(주)글로벌심층수	'10.6.	강원도	딤스, 풀무원해양심층수(OEM), 사랑해(OEM) 등
(주)솔트로드	'21.4	강원도	JUST기픈물, 마그네슘기픈물, 스노워터(OEM) 등

*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체가 구비 요건을 갖추고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

** 자료 : 해양수산부 제출